

제 정 : 2022.03.25

인사위원회 규정

2022.03.25



인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보상정책 수립 및 보상수준 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위원회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및 위원장)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의

제5조 (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개최시기 및 장소를 각 위원 및 제8조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6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연간 등기임원 보수한도 승인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검토
 2. 신규임원 보수수준 타당성 검토
 3. 임원 양성 및 승계 프로그램 검토
 4. 기본연봉 조정 검토
 5. 성과급(격려금) 재원 및 지급방식 검토
 6. 퇴임임원 보상방안 검토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연간 보수 집행현황 보고

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사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